

## I. 개요

### ▶ 녹색경영의 개념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제 2조 7호)



## I. 개요

### ▶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 I. 개요

### ▶ 도입 배경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환경정보**는 투자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두각
- 국제적으로 환경보고서 등 기업 환경정보의 **공개**를 유도하는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며, **국내·외 금융권**에서 **기업가치 평가** 및 **투자**를 위해 환경정보에 대한 **수요 증대**

[ 국내 금융권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0년, 중복응답 포함) ]



※ 설문대상 중 88%가 투자시 환경정보 활용의향을 있음



## I. 추진 배경



### ▶ 해외 주요동향

#### ● 정보공개 의무화

- > [정부주도 환경정보 의무공개 활성화] 중국, 일본, 인도 등 30개국에서 환경정보 공개와 관련된 총 142개의 제도가 있으며, 이 중 2/3이상이 의무 공개제도
-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확대 추세] UN은 1억불 이상의 자산규모를 갖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제안하는 등[Resilient People, Resilient Planet - a Future Worth Choosing, 2012], 환경정보공개에 대한 각국의 노력 촉구

#### ● 개도국의 환경정보공개 활성화

- > 중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은 정부주도(중국, 말레이시아) 및 증권거래소(브라질, 말레이시아)를 활용한 환경정보 공개가 활발

## I. 개요

### ▶ 해외 정책사례

구분	연차재무보고		환경보고서			
	법률적 의무	기재항목 규정	법률적 의무	기재항목 규정	대상기업	검증방법
덴마크	있음	없음	있음	부처법령	특정오염물질 배출업체	제3자검증
네덜란드	있음	회계기준	있음	부처법령	환경시설허가대상 자발적 사업장	제3자검증
스웨덴	있음	회계기준	정부제출용만 있음	부처법령	특정오염물질 배출업체	재무보고서 검증
EU (EMAS)	있음	회계기준	있음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기업 등	제3자검증
일본 (환경배려촉진법)	-	-	있음	부처법령	공공기관	자체 검증
일본 (EcoAction21)	-	-	-	가이드라인	기업 대상	제3자 검증



## I. 개요

### ▶ 추진목적

- 녹색경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 이해관계자와의 녹색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의 녹색경영 기반 조성

###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 ▶ 공개절차



## I. 개요

### ▶ 그간의 추진경과



## I. 개요



### ▶ 기대 효과

#### ● 자발적 녹색경영 확산

- ▶ 기업·기관이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녹색경영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전사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통한 자발적 녹색경영 확산

#### ●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 ▶ 투자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가 손쉽게 녹색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및 기관 등의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 ●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 금융기관 및 투자자 등이 필요로 하는 환경정보에의 접근을 강화하여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



운영규정 주요내용

## II. 제도 주요내용



### ▶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법 시행령 제22조의9)

1.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
4. 국·공립대학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5. 지방공사·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관리업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 II. 제도 주요내용



### ▶ 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 (규정 제4조)

#### ● 기관특성별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1. 제조	제조업(10~33)
2. 공공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3.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85)
4. 보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86~87)
5. 기타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55~56), 금융 및 보험(64~66) 등
6. 기타산업	위 제1호 내지 제5호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등

## II. 제도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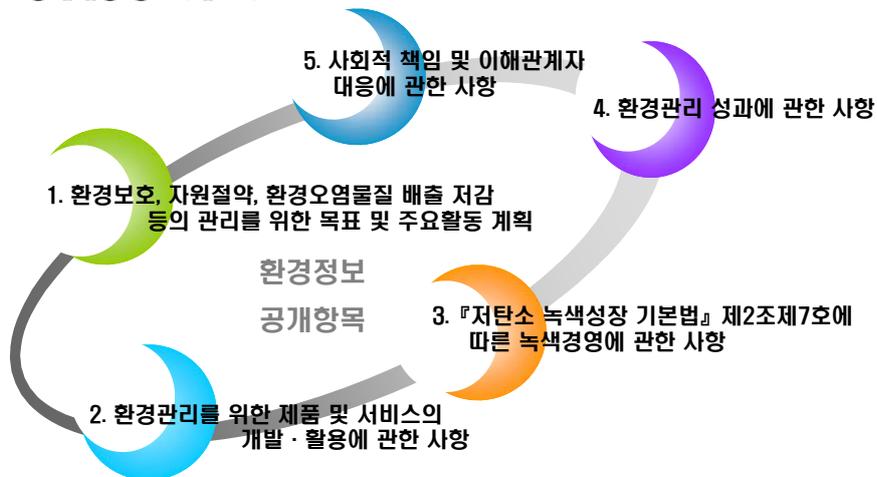
### ● 기관특성별 환경정보공개항목 선정

▶ 국내외 녹색경영 평가지표 분석 및 기관특성별 실무자·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의무·자율항목 선정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기관특성을 반영한 공개항목 기준 마련

구분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의무	자율	의무	자율	의무	자율	의무	자율	의무	자율	의무	자율
기업개요 (사업현황 등)	1	1	1	1	1	1	1	1	1	1	1	1
전략 및 녹색경영시스템	1	1	2	-	1	1	1	1	1	1	1	1
자원/에너지 (원부자재,용수 등)	4	1	2	2	2	2	2	2	2	2	4	1
온실가스/ 환경오염	6	3	1	6	1	6	2	5	1	6	6	3
녹색제품/ 서비스	-	6	1	-	-	1	-	1	-	1	-	6
사회/윤리적 책임(법규준수 등)	1	2	1	2	1	2	1	2	1	2	1	2
<b>계</b>	<b>13</b>	<b>14</b>	<b>8</b>	<b>11</b>	<b>6</b>	<b>13</b>	<b>7</b>	<b>12</b>	<b>6</b>	<b>13</b>	<b>13</b>	<b>14</b>

## II. 운영규정 주요내용

### ▶ 공개대상 정보 (제5조)



## II. 운영규정 주요내용

- 환경정보 공개항목 사례(제조분야, 기타 산업분야)  
: 총 27개(의무 13개, 자율14개)



## II. 제도 주요내용

### ▶ 환경정보의 공개·검증 절차 (규정 제4조, 제8조)

#### 〈환경정보의 등록〉

#### ● 환경정보 공개·검증 절차



- 기관 등은 환경정보를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월 말 까지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등록

- ※ 환경정보 공개 대상기관의 부담 감소를 위해 2011년의 환경정보 등록에 대해서는 **2012년 9월말까지 등록하도록 규정**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

## II. 제도 주요내용



### ▶ 환경정보의 공개·검증 절차 (규정 제4조, 제8조)

#### 〈환경정보의 검증〉

##### ● 환경정보 공개·검증 절차



##### ● [서류확인] 정보 등록확인 및 내용 서면 검토

- ※ 적정성 : 의무공개항목 누락여부 및 미작성 사유, 등록매뉴얼 준수여부 확인
- ※ 일관성 : 등록정보관 상충여부 확인, 이전년도 등록정보 내용과의 비교 등 확인

##### ● [현장검증]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환경정보 산출과정 타당성 확인 등 현장실사

- ※ 기관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검증 대상 선정 예정

## II. 제도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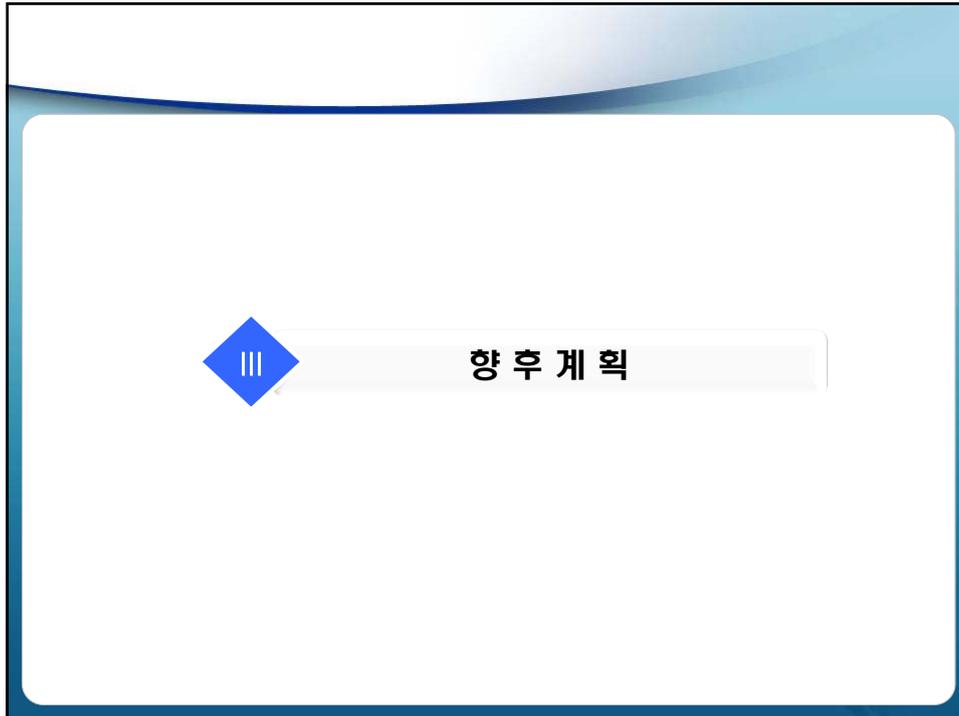
### ▶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운영 (규정 제3조)

- 환경정보의 작성·공개를 지원하고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 환경정보검증센터를 설치·운영
- 검증센터는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을 구축·운영



▶ 2008.12.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 (<http://www.emis.re.kr>) 구축

▶ 2010. 7.~2011.11. 녹색기업 대상 09년(187개), 10년(195개) 정보공개 시범운영



### III. 향후 추진계획



#### ▶ 기업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 특성별 설명회 지속 추진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및 기관 등 대상기관 별 제도설명회 및 상담회 실시 (2012.5)

일시	대상기관	공개업종	장소
5.7(월)	공공기관(서울·경기소재)	공공행정, 보건, 교육서비스 등	프레스센터(서울)
5.9(수)	온실가스목표관리 대상기업 (서울·경기소재)	제조,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대한상의(서울)
5.15(화)	공공기관(경남소재)	공공행정, 보건, 교육서비스 등	낙동강청(창원)
5.16(수)	온실가스목표관리 대상기업 (경상소재)	제조,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백스코(부산)
5.17(목)	공공기관(충청소재)	공공행정, 보건, 교육서비스 등	대전컨벤션(대전)
5.18(금)	온실가스목표관리 대상기업 (충청소재)	제조,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대전컨벤션(대전)
5.22(화)	온실가스목표관리 대상기업 (전라소재)	제조,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김대중컨벤션(광주)
5.23(수)	공공기관(전라소재)	공공행정, 보건, 교육서비스 등	영산강청(광주)
5.25(금)	공공기관(경북소재)	공공행정, 보건, 교육서비스 등	대구청(대구)

### III. 향후 추진계획



#### ▶ 환경정보등록 세부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추진

-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 대상 기관·기업의 정보공개 제도 대응을 위한 **환경정보 등록 매뉴얼 제작·배포** (2012.4)

#### ▶ 기업 밀착형 환경정보 등록 지원사업 추진

- **Helpdesk 운영**을 통해 기업의 환경정보 수집, 온라인 등록 등 정보공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실시간 해소**
- **중소기업의 정보공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등록지원사업** 추진 (2012.6~9)

#### ▶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시상

- 환경정보를 성실히 공개하고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시상** (2013.1 예정)

감사합니다